

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5. 3. 21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4년 10월 25일 · 서순보 의원의 11인 발의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0월 26일 원안 회부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- 제14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재무건설위원회(2004. 11. 5) 상정 · 보류
- 제14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재무건설위원회(2005. 3. 21) 상정 · 보류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서순보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○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, 하수도, 가로등, 경로당 등의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전면개정되어 시행(2003. 5. 29 개정, 2003. 11. 30 시행)하게 됨에 따라 그 지원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 하려는 것임.
- 나. 주요골자
○ 공동주택관리지원의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함 (안 제2조).
○ 지원대상은 단지내 도로, 가로등, 하수도, 경로당 등 공용시설물이며, 지원한도는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제4조).
○ 지원방법은 각 공동주택관리주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심의·결정하도록 함 (안제5조).
○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관계공무원, 구의원, 주택·건축·토목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,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(안 제6조).

- 위원회의 기능은 지원사업계획의 수립·집행, 지원사업대상 및 지원금 교부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결정하도록 함 (안 제6조).
-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시 발언할 수 있으나,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함 (안 제10제3항).
-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 (안 제11조).
-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이후에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,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도록 함 (안 제13조).
- 지원금을 교부 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이 완료한 때에는 사업추진실적과 그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,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관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검사를 거부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 또는 반환하도록 함 (안 제15조)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 략

5. 討 論 要 旨

- 이종환 위원의 심사보류안 동의

6. 審査保留案의 要 旨

-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써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투자의 우선순위 고려해 볼 때에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아니하고, 또한 공용시설물의 지원범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재검토를 한후에 심사 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함.

7. 審 査 結 果 : 심사보류

(서순보 의원의 11인이 발의한 원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로 가결함)